

사천시탁로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

제 90 회 사 천 시 의 회 임 시 회

제1차 총무위원회(2004. 10. 22)

1. 심사 경과

가. 2004. 10. 15 : 사천시장 제출

나. 2004. 10. 15 : 총무위원회 회부(의안번호 제 47호)

다. 2004. 10. 22 : 제9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상정의결

2. 제안 설명 요지(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가. 제안 이유

관련법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나. 주요 내용

1)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 정비

○ 생활보호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 현실과 부합되도록 조문 정비

○ 난방장치 심야전기 사용 의무규정 삭제

다. 관계 법령

○ 노인복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3. 검토 보고 요지(전문위원 김태주)

○ 본 개정 조례안은 관계법령인 생활보호법이 1999. 9. 7 폐지되고 이 법을 대신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새로 제정 시행됨에 따라

- 생활보호법에서 사용하던 용어인 “생활보호대상자” 를 새로 제정된

법령의 용어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로 하고

- 조례 제4조의 시설설치기준 중 “난방장치의 심야전기 사용의무규정을 삭제하는 것” 은 탁로소 설치 시 지역여건과 현실에 맞는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는 것으로서

○ 본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여도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위원	질의요지	답변자	답변요지
이문상 위원	<p>■ 본 조례개정안중 제4조1호의 “난방장치는 반드시 심야전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요금을 절약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였는데 이는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오히려 심야전기사용을 권장해야 할 시책이라고 삭제하는 이유는?</p>	<p>사회복지과장 임귀자</p>	<p>■ 본 개정안 제4조 5호의 삭제는 탁로소 설치 시 지역여건과 현실에 맞는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임.</p>

5. 토론 요지 : 수정 가결 의견

6. 심사 결과 : 수정 가결(수정안 별첨)

7. 소수 의견 : 없음